



의 정 부 시



수신 장기요양기관 338개소 대표자
(경유)

제목 장기요양기관 대상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및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916(2024. 11. 21.)호 및 노인복지과-27624(2024. 11. 21.)호와 관련됩니다.
2.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국민의 존엄한 삶 마무리를 위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치료효과가 없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기관에서는 붙임의 안내자료를 참고하여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안내하여 주시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요청시에는 아래의 등록 기관으로 연계 바랍니다.

【관내 등록 기관】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의정부시 보건소	의정부시 범골로 131	031-870-6047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의정부시 천보로 271	1661-7500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	의정부시 금오로 64	1577-1000

- 붙임 1.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자료 1부.
2. 연명의료결정제도 브로슈어 1부. 끝.

의 정 부 시 장



주무관 장유진 노인요양팀장 조경심 노인정책팀장 대결 2024. 11. 22. 노인복지과장 전결
신인숙

협조자

시행 노인복지과-11817 (2024.11.22) 접수

우 11622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 의정부시청 (의정부동) / <http://www.ui4u.go.kr>

전화번호 031-828-4222 팩스번호 031-828-4189 / dbjinwkd@korea.kr / 비공개(5)